의 안 번 호	제112호
의결 연월일	2017. 12. 20.

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2월 01일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17년 12월 01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17년 12월 20일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논산시정 발전에 기여한 내·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

나. 주요내용

1) 수여대상자 자격 요건 다양화(안 제2조)

- 교육분야를 추가하고,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거나 퇴임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, 시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, 시정시책 및 교류활동 추진에 협력하거나 필요한 사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 불필요한 수식어를 삭제하고 현대적인 표현으로 단어 변경함.

2) 대상자의 공로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·의결기구 변경(안 제3조제1항)

-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산시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함.

3) 명예시민제도 운영 및 혜택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3조의2)

-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명예시민에게 각종 서비스 제공 및 교류활성화, 혜택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명예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 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112호

제안연월일 : 2017. 12. 20.
제 안 자 : 백승권, 민병춘, 임종진, 윤예중, 이충렬

1. 수정이유

❍ 논산시장이 제출한 「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 임

2. 주요 수정내용

가. 안 제2조제5호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중 “시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”을 삭제함

나. 안 제2조제6호를 안 제2조제5호로 함

□ 수정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5호를 삭제 한다.

제2조제6호를 제2조제5호로 한다.

제2조제7호를 제2조제6호로 한다.

□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수여대상) (생략)	제2조(수여대상) (생략)	제2조(수여대상)(개정안과 같음)
1.~ 3. (생략)	1.~ 3. (생략)	1.~ 3.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4.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거나 퇴임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	4.(개정안과 같음)

4. 그 밖에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7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공로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	6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공로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
<신 설>	5. 시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	< 삭제 >
<신 설>	6. 시정시책 및 교류활동 추진에 협력하거나 필요한 사람	5. 시정시책 및 교류활동 추진에 협력하거나 필요한 사람